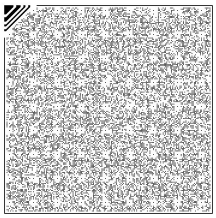
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

식품의약품안전처
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

#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



수신 관내 화장품 업체(제조업, 책임판매업, 맞춤형화장품판매업) 대표
(경유)
제목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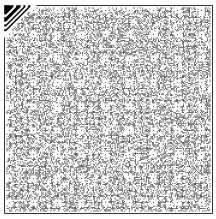
1. 화장품 법령의 개정·시행에 관한 안내입니다.

2. 「화장품법」 법정 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이 2022. 2. 18.자로부터 시행(2021. 8. 17. 개정)됨에 따라, 관내 화장품 업체의 **'책임판매관리자' 및 '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'**로 등록된 종사자가 「화장품법」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**최초 및 보수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연1회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**, 「화장품법」 제4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과태료(50만원)이 부과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

3. 또한, 화장품제조업자,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「화장품법」 제5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, **교육명령**에 대해 교육실시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「화장품법」 제40조제1항제4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과태료(50만원)가 부과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

4.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으니, 이를 확인하여 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.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및 과태료 부과 안내문 1부. 끝.



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

주무관 **이유리** 주무관 **전규재** 의료제품안전과 과장 **정호** 2022.5.23.

협조자

시행 의료제품안전과-4867 (2022. 5. 23.) 접수

우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39, (오룡동) / http://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62-602-1460 팩스번호 062-602-1430 / dewnsea@korea.kr / 비공개(5,6)

힘내라 대한민국!